

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연결집단)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연결사업연도		연결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	--	-------	--	---------	--

1.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

① 과세표준		세율	② 세액
구분	금액	20%	
③ 법인세 감면세액			
④			
⑤ 소계			

2.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

⑥ 구분	⑦ 감면내용	⑧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 조항	코드	⑨ 감면세액 (소득금액)	비고
⑩ 비과세	⑩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	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·제40조	604	()	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
	⑩②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	제13조의4	62Q	()	
	⑩③		606		
⑪ 소득공제	⑪④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	제55조의2제4항	460	()	별지 제7호서식 ⑪란 해당 금액
	⑪⑤ 주택임대소득공제(연면적 149㎡ 이하)	제55조의2제5항	463	()	
	⑪⑥				
	⑪⑦		458		
⑫ 비과세·소득공제분 감면세액			6A1		(과세표준+소득금액) ×세율-산출세액
⑬ 세액감면	⑬⑧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	제21조	123		별지 제8호서식(감)의 ④란 해당 금액
	⑬⑨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	제22조	103		
	⑬⑩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구 제33조의2	192		
	⑬⑪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	구 제33조의2	13A		
	⑬⑫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	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·제40조	13B		
	⑬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	제62조제4항	13F		
	⑬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	제85조의2	11A		
	⑬⑮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	제85조의6	11L		
	⑬⑯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	제85조의6	11M		
	⑬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	제96조	13I		
	⑬⑱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	제96조의2	13N		
	⑬⑲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8	181		
	⑬⑳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9	182		
	⑬㉑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제1호	197		
	⑬㉒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제2호	198		
	⑬㉓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제3호	1D2		
	⑬㉔ 지역개발사업구역,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제4호	1D3		
	⑬㉕ 해양박람회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제5호	1D4		

⑬ 세액
감면

⑫6	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 제6호	1D5	
⑫7	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 제7호	1D7	
⑫8	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 제8호	1D6	
⑫9	평화경제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 제9호	1D8	
⑬0	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 제10호	1D9	
⑬1	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0제1항	11C	
⑬2	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1제1항	11G	
⑬3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2	17A	
⑬4	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2	17B	
⑬5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2	13H	
⑬6	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2	13V	
⑬7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8	13P	
⑬8	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9	13Q	
⑬9	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 제1호	13R	
⑭0	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 제3호	1E1	
⑭1	해양박람회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 제5호	1E2	
⑭2	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 제8호	1E3	
⑭3	평화경제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 제9호	1E4	
⑭4	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1제1항	13U	
⑭5	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0제1항	13T	
⑭6	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33	1D1	
⑭7	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33	1C1	
⑭8			164	

별지 제8호서식(감)의
④란 해당 금액

⑭ 세액 공제	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	구 제5조	131	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④ 감면(공제)세액란 및 ⑦ 공제세액란의 해당 금액
	⑮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제7조의4	14Z		
	⑯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	제8조의3제1항	14M		
	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제8조의3제2항	18D		
	⑱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제3항	18L		
	⑲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제4항	18R		
	⑳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	제8조의3제5항	15B		
	㉑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3	14T		
	㉒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4	14U		
	㉓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2	18E		
	㉔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2제2항	15C		
	㉕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제19조	18H		
	㉖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2호	177		
	㉗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3호	14A		
	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4호	142		
	㉙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5호	136		
	㉚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6호	135		
	㉛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의4	14B		
	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의5	18B		
	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기본공제)	제25조의6	18C		
	㉞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추가공제)	제25조의6	18B		
	㉟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제25조의8	15A		
	㊱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구 제25조의7	181		
	㊲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	제26조	14N		
	㊳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	제29조의2	14S		
	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3제1항	14X		
	㊵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제29조의3제2항	18J		
	㊶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4	14Y		
	㊷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5	18A		
	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7	18F		
	㊹ 통합고용세액공제	제29조의8	18S		
	㊺ 통합고용세액공제(정규직 전환)	제29조의8	1B4		
	㊻ 통합고용세액공제(육아휴직복귀)	제29조의8	1B5		
	㊼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	제104조의14	14E		
	㊽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1항	141		
	㊾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2항	14K		
	㊿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4항	14R		
	①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	제104조의22	140		
	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25	14P		
	③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	제126조의7제8항	14V		
	④ 금사업자와 스크램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122조의4	14W		
	⑤ 우수 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	제104조의30	18M		
	⑥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32	10C		
	⑦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	제104조의35	1F1		
	⑧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	제13조의3제1항	18N		
	⑨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	제13조의3제3항	18P		
	⑩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96조의3	10B		
	⑪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제99조의12	18Q		
	⑫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제24조	13W		
	⑬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제24조	1B1		
	⑭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제24조	13X		
	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제24조	1B2		
	⑯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3Y		
	⑰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B3		
	⑱ 통합투자세액공제(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3Z		
	⑲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B9		
	㉑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	제104조의15	1B6		
	㉒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25조의7	1B7		
	㉓		165		
⑮ 감면세액 합계					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“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연결법인별)(별지 제76호의21서식)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(연결집단 합계표)입니다.

※ 근거 조항 중 “구”는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말합니다.